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5 2026.9.14.



"라벨, 통관 막는 복병" 중국, 식품 수입규제 강화

[비관세장벽 리포트]
단순 번역 라벨로는 통관 어려워… 해외생산기업 등록·표본검사도 강화 (13p)

[이주의 초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B·O·O·S·T' 전략으로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 총력전 (4p)

[위클리뉴스]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 "관세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
중소·중견 무역금융 올해 120조원 공급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10월 31일까지 운영 (8p)

[오피니언: 인도]
영국과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 및 인도 진출 기업의 FTA 활용 방안 (17p)

[관세 행정]
한·미 FTA 제1901.20호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외세번 해석 (22p)

[품목분류 동향]
반도체 공정용 가스 제어기의 품목분류 해설 (31p)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화물검사 강화하고 민간 협력 확대 (40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백형민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9월 14일(통권 제2195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 총력전

08 **Weekly News**

비관세장벽 리포트

13 중국, 식품 수입규제 강화··· 라벨이 통관 막는다

전문가 칼럼

17 **윤승현**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관세사)

인도·영국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

관세행정실무해설

22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제1901.20호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외세번 해석

29 **질의응답사례**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품목분류동향

31 **품목분류해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제어기의 분류

일본 관세 리포트

40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화물검사 강화하고 민간 협력 확대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 총력전

2026년 7월까지 83.2억달러… 정부, 전략품목 육성·신흥시장 진출 추진

올해 농식품 및 농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이 7월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간 수출 160억달러 달성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하반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주력시장의 소비층을 넓히고 신흥·유망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일 '제3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K-푸드+ 수출 총력 대응 전략(B·O·O·S·T)'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연간 수출 목표 160억달러 달성을 위해 ▲대표 전략품목 총력 육성(Best Selling Items), ▲주력·신흥·유망시장 타깃 공략(Overseas Outreach), ▲글로벌 유통망 판촉 총력전(On-site Marketing), ▲기업 현장 맞춤형 핀셋 지원(Support as One-team),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Trade Barrier-free)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 하반기 K-푸드+ 수출 총력 대응 전략 ●

구분	대응 전략
대표 전략품목 육성	- 포도, 신선농산물 단일품목 기준 1억달러 수출 목표 - 딸기·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 전통주·김치·쌀가공식품 등 전략품목 해외 판로 확대
주력 및 신흥·유망시장 타깃 공략	- 미국 메인스트림 유통망 진출 확대 및 중국 4대 플랫폼 온라인 시장 공략 - ASEAN·유럽·중동·중앙아시아·중남미 등에 판촉·맞춤형 마케팅
글로벌 유통망 판촉 총력	- 코스트코·H-마트 등 글로벌 유통망 연계 판촉 확대 - 명절·쇼핑 시즌 등 하반기 주요 소비 시즌에 따른 마케팅 집중 공략
기업 현장 맞춤형 핀셋 지원	- 연관 품목 동반 진출·공동 판촉 및 수출기업 현장 애로 지원 - 잔여예산 조기 재배정 및 수출 바우처 추가 지원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	- 주요국 규제 동향 상시 점검 및 수출기업 가이드·컨설팅 제공 - 인허가 지원 및 K-푸드 위조·모방품 대응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 2026년 7월 말 기준 수출액 83.2억달러… 미·중 수출도 성장세

K-푸드+ 수출은 여러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83억 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다. 라면은 7개월 만에 10억달러를 돌파해 가공식품 중 단연 돋보인다.

품목별로는 신선과일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만·미국·ASEAN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포도는 35%, 배는 55.2%, 딸기는 15.7% 상승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검역이 타결된 제주산 한우·한돈의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EU 검역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닭강정·냉동만두 등) 수출액은 532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8%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미국이 11억 8,000만달러로 9.8%, 중국은 9억 4,000만달러로 6.7%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동(GCC, 33.2%), 중남미(24.4%), 유럽연합(EU, 18.9%), 중앙아시아(CIS, 4.6%), ASEAN(1.6%) 등도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 출하기 시즌과 글로벌 대형 쇼핑 시즌이 집중된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출 총력전에 돌입해 2026년 수출 목표액인 16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B·O·O·S·T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미국·중국 수출 동향 ●

구분	미국				중국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전년 대비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전년 대비
전체	1,592.5	1,802.7	1,178.1	9.8	1,511.5	1,586.9	943.8	6.7
라면	215.6	254.7	195.1	25.8	260.6	385.4	251.6	25.2
김치	48.0	43.7	28.0	7.3	0.1	0.0	0.0	51.5
쌀 가공식품	173.2	149.0	102.5	17.1	9.1	7.5	3.2	△39.2
소스류	87.8	92.1	58.2	0.2	53.3	60.4	30.6	△14.8
포도·배	42.8	47.1	5.9	59.8	2.2	0.8	0.2	△68.5

단위: 100만달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7월 20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농식품 수입액(2,225억 607만달러, 전년 대비 8.9% 증가) 중 한국산 비중은 0.8%에 불과했지만, 수입액(약 18억 5,466만달러)은 전년 대비 27.3% 증가해 전체 시장보다 성장세가 높았다. 특히 라면(70.3%), 곡류조제품(442.4%) 등 가공식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농식품 수입은 전년 대비 8.6% 감소했지만, 한국산은 16억 269만달러로 오히려 15.8% 증가했다. 특히 라면 수출액은 약 2억 6,056만달러로 20.9% 증가하며, 중국 농식품 수출을 견인했다.

● 2024년 미국·중국 농식품 수입시장 동향 ●

구분	미국		중국	
	전체	한국산	전체	한국산
수입액	222,506.1	1,850.6	197,236.9	1,602.7

구분	미국		중국	
	전체	한국산	전체	한국산
전년 대비 증감률	8.9%	27.3%	△8.6%	15.8%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	9.8%	12.3%	5.6%	11.8%
한국산 비중	-	0.8%	-	0.8%

단위: 100만달러,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 포도 등 신선농산물 집중 육성 및 K-푸드 수출시장 넓힌다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 단일 품목 최초로 포도 1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다. 최고 품질 원물 1만 2,000톤을 확보하고 미국 코스트코 진출 등을 통해 미국 수출 물량을 기존 대비 150% 확대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검역단지는 41개(2025년 31개)로 확대해 생산단계부터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항만 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용 파레트를 보급한다. 또한 주말·공휴일 검역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기 선적을 보장한다.

딸기는 숙도가 90%로 높은 프리미엄 제품의 시범수출과 지난해 검역 타결해 최초로 수출을 개시한 브라질 등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배는 대미 수출이 편중(55%)된 점을 완화하고자 대만·베트남으로 유통망을 확대한다. 수출물량은 별도 저장·관리해 수출기간을 익년 4월에서 5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검역 협상이 타결된 단감(중국)과 한우·한돈(홍콩·싱가포르)은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미국에서는 라면·소스·쌀가공식품 등의 현지 주요 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해 일반 소비자까지 소비층을 넓힌다. 중국에서는 티몰·징동·더우인·핀둬둬 등 4대 플랫폼에 '상설 한국식품관'을 운영해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3일 내 전국 배송이 가능한 K-푸드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을 확대한다.

ASEAN에서는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복합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해 신선농산물 수출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할랄 특화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럽에서는 열처리 가금육을 홍보하는 한편,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따른 통관 문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 수출기업 '핀셋 지원', 비관세장벽도 선제 대응

미국의 코스트코·H-마트, 중국의 Ole·리춴, 베트남 K-마켓 유통망과 협력한 판촉행사를 통해 현지 제품과 차별화된 유통채널 특성을 활용한 판촉을 추진한다. 또한, 추수감사절·블랙프라이데이 등 명절과 대규모 쇼핑 시즌이 있는 9~12월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선물용 상품,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중심으로 수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수출기업·농협 등과 '수출 원팀'을 구성해 연관 품목의 동반 진출과 공동 판촉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이 참여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통한 현장 상담도 강화한다.

또 잔여·불용 예산(40억원)을 9월 중 재배정하고 수출 바우처 차등 자금(84억원)을 추가 투입해 전략품목 수출기업과 외국산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규제 변화 시 전담 대응반 구성, 초기 가이드라인 배포, 컨설팅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조·모방품 유통과 관련해 'K-푸드 지킴이'를 설치해 위조·모방품 유통이 빈번한 국가의 업체·재외공관·현지단속반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와 연계해 위조방지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 주요 시장별 K-푸드+ 2026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상승률 및 하반기 추진 계획 ●

시장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하반기 추진 계획
미국	9.8%	- 포도, 미국 수출 물량을 위한 2,700여 톤 확보 - 라면·소스·쌀가공식품 등 상품 입점을 위한 현지·한국 주요 유통 채널 확보 - 뉴욕 타임스퀘어 등 랜드마크 전광판에 홍보 영상 송출
중국	6.7%	- 4대 플랫폼 내 한국식품관 운영 및 K-푸드 물류 일괄 처리 시스템 확대 - Ole·리춴과 연계한 유통매장 판촉 행사 진행
ASEAN	1.6%	- 대만·베트남에 배 프리미엄 유통망 확대 및 수출기간 연장 - 베트남 복합거점물류센터 활성화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 할랄 특화 마케팅 - 싱가포르에 제주산 한우·한돈 공동 판촉
유럽	18.9%	-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참여해 닭강정·냉동만두 등 홍보 - 독일 '김치의 날'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중앙아시아	4.6%	- 몽골·카자흐스탄에 한국 편의점 라면·삼각김밥 판촉 - 러시아·카자흐스탄에 저온 유통 체계(콜드체인) 시범 지원
중동	33.2%	- 아랍에미리트 코르파칸항을 대상으로 콜드풀링 시범사업 - 사우디아라비아 식품박람회, 판촉전, 팝업스토어 등 참여
중남미	24.4%	- 브라질에 고숙도 프리미엄 딸기 약 30톤 시범수출 - 낮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스트리트 푸드, 딸기 론칭행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기관·민간이 원팀이 돼 상반기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김다솔 기자 |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 관세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

9월 27일까지 특별통관팀 가동해 해외 직구 특송물품도 신속 처리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34개 세관은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과 야간에도 운영되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차단한다. 명절 선물처럼 해외 직구 물품이 집중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 추석 맞이 관세청 특별 지원대책 ●

대책	시행기간	주요 내용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7.~9.27.	◦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공휴일·야간 포함) ◦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및 수입식품 검사 강화로 불법·위해식품 반입 차단 ◦ 인천 등 5개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으로 해외 직구 물품 신속통관 지원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상시	◦ 냉동 돼지고기·과일 등 할당관세 품목의 비축행위 방지,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보세구역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신속 반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9.10.~9.23.	◦ 관세환급 당일 지급, 마감 후 신청은 익일 오전 지급 ◦ 성실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분할납부(최대 6회) 허용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9.4. 9.11. 9.18.(3회)	◦ 명절 소비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8.31.~9.23.	◦ 수입 제수·선물용품 국산 둔갑 판매 단속 ◦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물품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자료: 관세청, 정리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냉동 돼지고기와 과일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가안정 품목은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점검으로 물품이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조치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다. 관세청은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평일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정성 심사는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이후 진행한다. 통상 환급금 지급에는 평균 2일 걸리지만, 당일 지급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기·소갈비·참깨·된장·간장·고춧가루·문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tradedata.go.kr)에서 공개한다.

제수·선물용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도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이 큰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수출기업 보증 문턱 낮춘다" 중소·중견 무역금융 올해 120조원 공급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한다. 과거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보증한도를 늘리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가 9월 9일 발표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규모가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2027년 14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누적 수출액이 9월 5일 기준 7,094억달러로,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특례보증과 3대 유동성 프로그램을 결합한 '1+3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우선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린다.

대기업과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은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맞춰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도 내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는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를 5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연간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도 현재 78곳에서 85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수출기업은 중장기 성장자금을 확보하고 외상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 김다솔 기자 |

"수출입 조작 근절" 무역범죄 범정부 합동단속

정부가 수출입실적과 원산지 등을 조작해 상장이나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혜택을 받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단속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9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상장기업과 조달계약업체, 보조금·정책금융 수혜기업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연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수사 또는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9월 3일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TBFC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 점검한다. 불성실공시법인·투자주의환기종목·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전후의 수출입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등 지정우수기업이 선정·연장 과정에서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도 조달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신청 전후 수출실적을 비교한다. 관세청은 중기부의 3개 지원사업 수혜업체를 분석해 의심기업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수입품의 가격을 부풀려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행위

도 조사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 확대나 금리 감면을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의 보험·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해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도 확인한다.

●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운영 점검·단속 운영계획 ●

자본시장 교란	시장퇴출 회피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 신규상장 기업의 수출실적 조작
공공조달 부정납품	원산지 국산 둔갑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수요기관별 자체조달계약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출보조금 편취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 건강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
정책·무역금융 편취	정책금융 편취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 무역금융 편취를 위한 무역서류 위조

관세청은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와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입수 가능한 자료에 TBFC 공유정보 추가를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 법령에도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김다솔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세평가분류원이 10월 31일까지 8주간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기업과 해외 현지법인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될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의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해 해당 사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기업에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 제공한다. 국내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은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하고 상대국 세관에 품목분류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경우 영문자료도 지원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의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부품의 HS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원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교역국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수출기업은 수출 전에 적정 HS Code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세관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국내 유통된 중국산 줄기상추는 식용색소 '불검출'

중국산 줄기상추의 식용색소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는 식용색소가 사용된 줄기상추가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18건을 긴급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9월 11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중국에서 줄기상추를 신선하게 보이고자 색소를 사용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었다. 줄기상추는 국내에서 주로 '궁채'로 불리는 채소로,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 등 어떠한 색소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7일부터 중국산 줄기상추 통관 과정에서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미 검사한 건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도 추가로 확보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유통 및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목이버섯은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17배, 백목이버섯은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5배 높았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약이며,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중국산 발암배추' 논란에 이어 이번 '염색 줄기상추', 잔류농약 버섯까지 불거지면서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림수산식품의 국내 수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농림수산식품 수입량은 2025년 720만톤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김치는 전체 수입액의 99.9%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다솔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관세 장벽 리포트

최근 탄소배출량, 강제노동 검증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 리스크를 알아본다.

중국, 식품 수입규제 강화… 라벨이 통관 막는다

한국산 부적합 사례 중 라벨 문제 최다… 단순 번역한 라벨로는 통관 불가

8월 25일 열린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26일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에서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오성호 관세관은 "과거의 중국, 일명 '꽌시(關係)'는 잊어라"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국의 행정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제도와 규정에 기반한 수출입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 만큼 과거의 수출 경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제15차 5개년 추진계획(2026~2030년)에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해관총서는 해관 현대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정치·경제·수출통제·품질 등 여러 요소를 통합 관리해 국경 단계의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물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율기반 감독관리로 통관·물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30년까지 항구의 90% 이상에 지능형 검사장비를 배치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무감통관(无感通关)' 환경을 상용화할 방침이다.

해관총서는 식품을 비롯해 안전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 6월 1일부터 법정검사를 제외한 일부 수출입상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부문에는 포장재 등 식품접촉제품을, 수출 부문에는 유아·아동용품을 추가했다.

구분		주요 내용
검사	법정검사	해관이 공시한 법정검사 목록 지정 물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식품 등)을 의무적으로 검사
	표본검사	법정검사 대상 외(매년 공고)에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실시하는 불시검사

구분		주요 내용
품목조정	수입	식품접촉제품·성인 신발 추가, 문구류·가전제품은 제외 *식품접촉제품: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미 접촉했거나 접촉할 예정인 혹은 그 성분이 식품으로 이동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제품, 주방용품, 식품가공장비, 포장재 등
	수출	유아·아동용품 추가, 아동용 장난감, 조명기구, 기능성 의류 제외

자료: 오성오 관세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해관총서는 7월 17일 수출입상품 표본검사 해설서를 추가로 펴내 검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검사 대상에는 ▲인체 건강·재산 안전·환경 보호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상품, ▲수출량이 많고 품질이 불안정하거나 반품 사례가 비교적 많은 상품, ▲소비자와 사용자가 품질 문제를 제기한 수입상품, ▲과거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한 상품, ▲국내외에 새로운 특수기술 요구사항이 있는 상품 등이 포함됐다.

해외생산기업 등록, 위험기반 목록관리·자동연장 체계로 전환

중국은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수입식품의 무역 편의성을 높이고 위험기반 정밀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사후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목록관리 도입	18개 지정식품군은 소재국 정부 추천으로 등록신청, 그 외에는 기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해관총서가 식품의 특성, 안전이력 등을 분석해 공식 추천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을 확정·공포 위험기반 목록제 방식으로 전환
등록 갱신 자동연장제 전환	등록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 기업이 등록 연장 신청	유효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5년 자동연장 ※자동연장 불허식품 명단에 해당하는 식품이나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시정 중인 기업 등은 제외
명단등록 방식 신설	정부추천 방식, 민간등록 방식	정부추천·민간등록·**명단등록방식** ※상호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인정된 수출당국(한국의 경우 식약처)이 기업 명단을 제출하면 해관총서가 일괄 등록 가능
등록 취소 사유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규정 ※확대 식품안전사고 발생, 검사·검역 안전문제 심각 등	취소 사유를 9가지로 확대해 등록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신청자격·등록조건 미충족 기업을 등록허가한 경우와 법률에 따라 기타 취소 사유
등록 범위	-	명단 공개 관련 규정 신설, 냉동·냉장창고 등 해외 저장시설을 등록관리 범위에 포함

오 관세관은 표시 라벨과 통관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를 수시로 갱신해 중국 수입자의 신고오류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수입불허식품을 모두 공개하는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부터 라벨 기준 더 엄격··· '무첨가·제로첨가' 표현 제한

특히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라벨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대중국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37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라벨 부적합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 부적합에 제품 수입 미허용 또는 수입 미허용 동물원성 성분 함유(26건), 화물·증빙서류 불일치(19건)를 포함한 3대 주요 사유의 비중이 73%를 차지한다.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양 지에(YANG JIE) 부처장은 "라벨 정보 누락, 표시 미준수, 중문과 외국어 간 내용 불일치 등 기업의 라벨 규정 준수 검토가 미흡했다"며, "중국의 식품안전 및 라벨 관련 국가표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벨 규정 준수가 장기적인 중점과제인 만큼 기업들이 중국의 식품표시 관련 국가표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3월 16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 표시 통칙'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이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변경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새 기준에는 **디지털 라벨 도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무첨가·제로첨가' 등의 표현 원칙적 금지, 날짜 표시방식 표준화(연/월/일)** 등이 포함된다.

오 관세관은 "과대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중국 수출용 라벨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문구를 번역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품목분류 이견 대비해 중국 예비결정제도 활용

국가 간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사례로 동물사료 제품을 수출한 기업이 FTA 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 해관총서는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기업이 한국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서를 제출해 해관총서는 기업의 의견을 인정했다.

오 관세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품목분류 예비결정제도를 운영 중이니 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해관예재정관리잠행방법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원

산지기준, 관세평가 등을 사전에 판정받을 수 있다. 단, 세관에 등록된 대외무역업자가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등록지 직속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처리기한은 60일 이내이며,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수출입한 화물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즉,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전제하에 신청하는 제도다.

● 중국 해관의 품목분류 예비결정 제도 ●

	주요 내용
신청 대상	품목분류, 원산지 및 원산지 기준, 관세평가 등
신청 자격	수출입활동과 관련이 있는 세관에 등록된 대외무역업자(중국 현지 무역업체)
신청 기간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 등록지 직속 세관에 신청
처리기한	60일 이내 처리(화학실험, 검측, 감정, 전문가 검토 등의 기간은 미산입)
유효기간	3년, 효력 발생 전 수출입한 화물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재심 요청	예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관총서에 행정재의 신청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최초 수출 시 기한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해관총서가 법적 근거와 위험관리에 기반해 엄격하게 검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 관세관은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의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육류 성분이 포함된 라면도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관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공관이나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강제표준' 개정안을 공개해 또다른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통조림·즉석식품·드립백 커피의 필요공간계수를 세분화·조정해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통조림을 '가축·가금·수산물 통조림'과 '기타 통조림(과일, 채소 등)'으로 구분해 필요공간계수를 달리 정하고 드립백 커피 부문을 신설했다. aT 베이징지부는 관련 규정이 중국 내 생산·판매는 물론 수입식품에도 적용돼 한국 제품도 대상이 되며, 공포 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수출기업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 내 최대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세 이슈를 짚어봤다.

인도·영국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

역내 중심에서 호주·영국·EU 등으로 협정망 확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수출 기회



윤 승 현 |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관세사)

인도는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온 보호무역 국가로 인식돼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초기에는 스리랑카,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태국, 싱가포르, ASEAN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접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한국 및 일본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동아시아까지 협정 범위를 넓혀 왔다.

과거 인도의 FTA 정책은 인접국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ASEAN 등 역내 경제권을 기점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협정은 주로 상품관세 인하, 서비스 및 투자 개방,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정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FTA 전략은 방향과 내용 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인도·UAE CEPA와 인도·호주 ECTA[1]가 발효됐으며, 2025년 인도·EFTA TEPA[2]가 발효됐

1)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Australia-Indi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2) 인도·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경제파트너십협정(TEPA,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고, 2025년에 서명된 인도·영국 CETA(이하 '인도·영국 FTA')[3]가 2026년 7월 부로 발효됐다. 인도·EU FTA 또한 2026년 1월 협상이 타결돼 서명 대기 중이다.

인도의 통상전략은 기존의 역내 경제권 중심에서 중동, 유럽 및 기타 서구 선진경제권까지 포괄하는 다변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영국, EFTA, 호주, EU와의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서비스,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이동,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제협력 등 현대적 통상 의제를 폭넓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정과 구별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가 성장산업의 수출시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도는 여전히 농업, 낙농업 및 일부 제조업 등 민감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상대국의 선진시장에는 인도산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설계하고 있다.

인도·영국 FTA 발효··· 양국 시장개방 폭 넓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인도와 영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25년 5월 6일 협상 타결이 발표됐으며, 같은 해 7월 24일 런던에서 FTA가 정식 서명됐다.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인도·영국 FTA는 2026년 7월 15일 발효됐다. 인도 관세청(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은 2026년 7월 3일 Notification No. 62/2026-Customs(N.T.)를 통해 협정을 국내법으로 도입했다. 영국정부도 2026년 1월 협정

3)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발효일에 맞춰 상품무역, 원산지, 서비스,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각 장의 최종 협정문을 공개했다.

이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상당하다. 2025년 4분기 기준 최근 1년간 영국·인도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약 479억파운드(약 89조원)에 달했다. 영국의 대인도 수출은 193억파운드(약 36조원),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87억파운드(약 53조원)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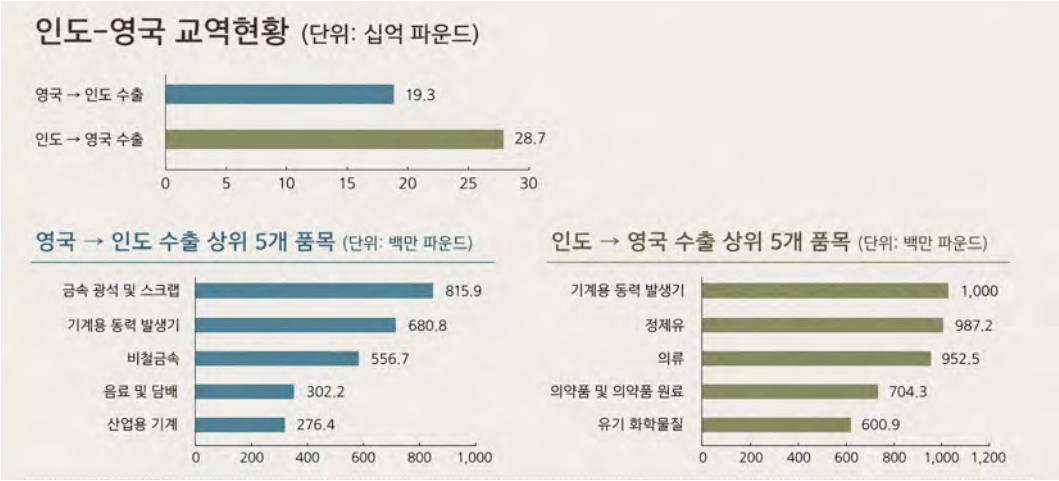

출처: DBT Trade and Investment Factsheet as on 19 Jun 2026 from the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UK,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양허 측면에서 영국은 인도 수출품의 약 99%에 무관세를 제공하며, 이는 사실상 인도의 대영국 수출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섬유·의류·가죽, 화학, 플라스틱, 고무, 보석, 기계·엔지니어링 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제품, 의료기기 및 소비재 등 대부분의 인도산 공산품은 영국 수입 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식품 및 자동차에는 관세할당 및 잔존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혜택은 HS Code별 양허표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인도는 영국산 제품에 대해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부분 감축, 관세할당 및 양허 제외를 혼합한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영국산 화학, 산업기계, 금속, 전기전자 및 의료기기에는 상당한 관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농식품, 자동차, 소비재 등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는 관세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자율 원산지증명 도입

인도·영국 FTA에서 한국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식이다.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은 크게 ▲인도 또는 영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인도 또는 영국의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중 품목별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세번변경기준(CC·CTH·CTSH, Change of Chapter/Change of Tariff Heading/Change of Tariff Sub-Heading), 부가가치기준(QVC, Qualifying Value Content), 특정 가공공정 기준 등이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이 조합된 결합기준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HS Code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자율 원산지증명 제도의 도입**이다. 과거 인도가 체결한 FTA에서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수용해 왔다. **인도·영국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인도 수출자는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운영하는 Trade Connect ePlatform에서 자율신고 방식 또는 기관발급 방식의 전자 원산지증명 절차를 선택해 발급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증명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지만 기업의 입증책임을 줄여주는 제도는 아니다. 인도 수입자는 수입서류, 원산지신고서 및 원산지 증빙을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출자와 인도 발급기관은 원산지 자료 및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인도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대국 관세당국을 통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검증 결과 원산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이미 감면된 관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인도 진출한 한국 기업의 FTA 활용 전략

인도의 FTA 확대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확장할 기회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의 대규모 내수시장과 생산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를 결정해 왔다. **앞으로는 인도 내수 판매뿐 아니라 영국, EU, UAE, 호주, EFTA 및 향후 체결될 다른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인도 내 제조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2025년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인도 내 세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2026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기존 한·인도 CEPA를 활용한 한국산 부품의 인도 수입뿐 아니라, 인도산 완제품을 영국과 향후 EU 등으로 수출하는 양방향 FTA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단일 협정 활용을 넘어, 인도를 여러 해외시장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생산·수출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 단순 조립이나 최종가공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도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부품과 원재료를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원산지 재료비가 높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별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원재료 HS Code, 공급자 원산지, 공정 및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원산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인건비가 낮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인도에서 발생한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제품 가격을 구성해 인도 내 부가가치로 계산되는바, 인도의 낮은 인건비에 따라 제품 가격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도 제한된다. 결국 저렴한 인건비는 생산원가 경쟁력에는 장점이지만, FTA 혜택 측면에서는 높은 비원산지 핵심부품 비중을 상쇄할 만큼 원산지 부가가치율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충족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고가의 비원산지 부품과 원재료를 우선 식별하고, 인도 현지 생산, 현지 공급업체 육성, 역내산 재료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갱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율원산지증명은 발급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편의가 있는 반면, 오류 발생 시 수출자와 수입자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생산기지에서 글로벌 수출거점으로

인도·영국 FTA 발효와 인도·EU FTA의 협상 타결은 인도의 FTA 전략이 역내 중심에서 글로벌 선진시장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높은 관세로 보호되는 거대한 내수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주요 시장과 연결되는 생산·수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고 있다. 인도 내수시장과 낮은 생산비용을 활용하는 기존 전략에 더해, 영국과 EU 등 서구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제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FTA를 통한 실제 관세 절감으로 연결하려면 협정별 양허세율,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공급망 구조 등을 요건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도의 FTA 확대가 모든 인도 생산제품에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인도 생산 물품의 BOM과 조달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인도를 내수 생산기지에서 글로벌 수출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원산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 FTA] 제1901.20호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외세번 해석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질문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에서 괄호 안의 제외세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1.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답변	한·미 FTA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중 '기타'의 원산지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이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괄호 안에 해당하는 세번의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만 해당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 판정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은 경제적 국적(economic nationality)을 의미한다.

한·미 FTA에서 원산지 상품에 대한 요건을 제6.1조(원산지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완전생산기준), ②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제6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불완전생산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③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원산지 재료 생산품)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충족)한다.

실무상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협정에 존재하는 ②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것인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PSR 내에서도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며 특정 HS Code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물품을 수출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경우 제외세번을 어떻게 해석할지, 원산지 특례기준(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제1901.20호(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다.

2) 한·미 FTA의 PSR 해석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에서는 HS Code별로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전제는 대부분 협정에서 규정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다. 협정에서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제6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또한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일반 주해)에서는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해석사항은 ①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는 것, ②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해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③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 중 ②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한·미 FTA에서의 PSR에는 특정 호, 소호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0201호~제02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0401호~제04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이는 한·미 FTA PSR에서는 여느 협정들과 달리 PSR 내에 완전생산기준(WO)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미 FTA와 관련된 기초적인 PSR 예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신선·냉장한 쇠고기(제0201호) 또는 냉동한 쇠고기(제0202호) 사례다. 타 협정의 경우 쇠고기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및(또는) 불인정 공정기준에 도축공정을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역외산 소를 도축만 수행한 쇠고기는 원산지 상품 인정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협정에서 활용되는 공통된 불인정공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제0201호의 PSR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제0105호 제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외산 소(제0102호)를 도축한 뒤 제0201호 또는 제0202호 쇠고기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PSR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둔 것은 제20류 주 규정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원산지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는 요건은 "~을 제외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사용하는 섬유류에 대한 PSR에서 각 방직용 섬유의 재질(면, 인조섬유 등)별 실과 직물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의 주제인 제1901.20호 또한 제외규정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제1901.20호(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에 대한 PSR 해석 방법을 문의하고 있으며, 제1901.2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두 가지 품목이 각각 상이하다.

1.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2. 기타'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해당 PSR에서 규정된 제외세번에 대한 해석방안을 문의하고 있다.

2) 제1901.20호

제1901호에는 곡분·밀크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6단위 소호의 수준(level)에서는 제1901.10호[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1901.20호(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제1901.90호(기타)로 분류된다.

제1901.20호의 기타 제품에 대한 한·미 FTA상 PSR은 다음과 같다.

HS Code	근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1901.20호	「FTA 관세법 시행규칙」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한·미 FTA 협정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제1103.20호·제1104.19호·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901.2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미 FTA 협정문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 제8호 관련)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미 FTA PSR이 처음 만들어진 HS 2002 기준에서는 ① 제1006호 및 제1102.30호, ② 제1103.19호·제1103.20호·제1104.19호·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이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FTA 관세법 시행규칙」상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① 제1006호, ②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의 것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HS 기준이 개정되면서 제1102.30호(쌀가루)가 삭제되고, 제1102.90호(기타)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제1102.90호의 쌀 제품의 것"이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과 한·미 FTA 협정문상 해석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현재 HS Code 기준으로 봤을 때 제1006호는 쌀 자체가 분류되니 제1006호에 분류되는 쌀은 모두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경우 쌀 제품이 아닌 경우(예: 제1102.90-1000호에는 보릿가루가 분류된다)에는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쌀 제품인 경우(예: 제

1102.90-2000호에는 쌀가루가 분류된다)에는 제외규정의 대상이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쌀 제품들의 경우 원산지 재료로서 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관세청에서는 제1901.20호 해석에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괄호 안에 해당하는 세번의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만 해당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외세번인 제1006호,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 해당 제외세번들이 어떻게 원산지 재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1006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2.9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3.1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3.2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4.1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4.2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4.3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전제로 하되, 제1006호(쌀)를 제외하고 있으며, 제1006호의 경우 제외세번 없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판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제1901.20호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쌀 관련 원재료들은 원산지 재료여야 하며, 원산지 재료라는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제품뿐 아니라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재료도 포함되나, 실무적으로는 제1006호에 분류된 쌀 자체가 역내산 충족을 위해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해석할 때 제외세번은 항상 원산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협정별로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누적기준 활용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한·미 FTA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돼 있으나 한·ASEAN FTA의 PSR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가 있다.

협정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HS 2017)
한·ASEAN FTA	제1602.42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후략>
	제1605.3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후략>
	제2106.90호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한·ASEAN FTA 일반기준의 완전생산기준은 수출당사국(the exporting Party)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상 완전생산기준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즉, 제1602.42호는 수출국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제1605.30호 및 제2106.90호는 "어느 당사국(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든(the territory of any Par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상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사용돼도 누적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FTA의 경우 제외세번에 대해 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한국산 또는 미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아닌 누적기준을 활용한 미국산 쌀을 활용해도 원산지 판정이 가능할 것이며, 설령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완전생산품)의 의미에서 식물성 생산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을 의미하므로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미 FTA 제6.6조(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면 조정가치의 10퍼센트까지는 역외산 쌀을 사용해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본 사례의 물품은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 즉, 최소허용기준 적용 불가 대상품목이다. 부속서 6-나(제6.6조에 대한 예외)에서는 제1006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104호,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1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쌀 제품, 또는 제1006호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는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제1901.20호 원산지 판정 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외에 제외세번이 원재료 내역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원산지 재료가 아닌 비원산지 재료 취급이 이뤄지므로 제외세번이 원재료 내역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901.20호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1류의 쌀 제품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필요하며, 실무상 제1006호에 분류되는 쌀 자체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외세번에 분류되는 재료가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역내산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쌀이 사용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를 활용해 원산지 입증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제외세번 해석 시에는 각 협정별 규정을 먼저 숙지하고, 제외세번에 대한 HS Code 구조를 확인해 어떻게 역내산 충족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에 최소허용기준과 누적기준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분야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만료 날짜가 돼 갱신할 경우 부호가 바뀌는지, 아니면 만료기간이 1년 연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일 경우 기존 부호를 재사용해 갱신됩니다. 또한, 제16조(부호의 관리)에 따라 갱신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사용정지 및 해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 제5호에 따른 정보변경: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를 변경
2. 제5조 제6호에 따른 갱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부호를 재사용(단, 갱신의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3. 제5조 제7호에 따른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4. 제5조 제8호에 따른 사용정지(해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시적으로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 해제
5. 제5조 제9호에 따른 해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③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의 경우 부호관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사용
2. 재발급한 경우: 종전에 발급된 부호는 해지하고,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3. 해지한 경우: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삭제

■ **제16조(부호의 관리)** ④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제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2. 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3. 갱신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4. 재발급한 경우: 재발급일로부터 1년
5. 사용정지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환급 분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청구권자는 수입신고상의 납세의무자이며,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 제3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규정에 따라 관세 등 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양수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양수인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으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제한이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에 연계된 국내 금융기관 계좌가 있어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환급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등 체신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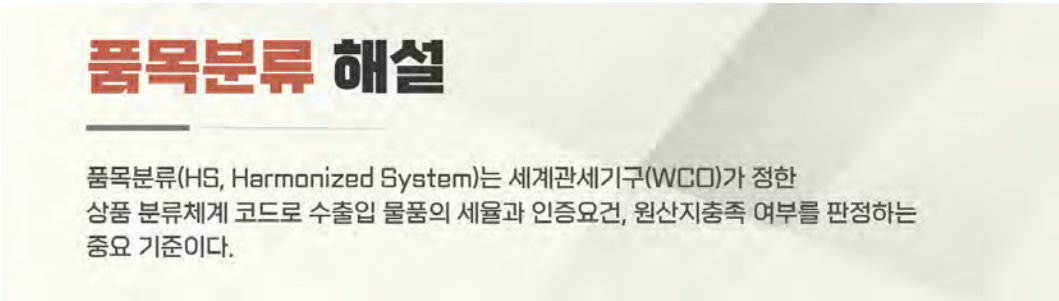

반도체 공정용 가스 제어기의 분류

- 유체 제어의 두 가지 핵심 변수, 유량과 압력의 이야기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원장)

1.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기기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Automatic regulating) 또는 자동제어용(Automatic controlling) 기기가 분류되며, 제90류 주 제7호는 자동조절용 기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7.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후략>

아울러 제9032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자동조절기가 갖춰야 할 구성적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 **제9032호 해설서**
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 <중략> ···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 ··· <후략>

제9032호의 소호 분류 및 소호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제9032호의 소호 분류 및 관세율 체계(FTA 제외) ●

호·소호	품명	관세율
제9032호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제9032.10호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기본 5%(항공기용) 기본 8%(기타)
제9032.20-0000호	- 매노우스타트(manostat)	양허 0%
제9032.8호	- 그 밖의 기기	
제9032.81호	-- 액압식이나 공기압식	기본 0%
제9032.89호	-- 기타	기본 3%(반도체용) 기본 5%(항공기용) 기본 8%(기타)
제9032.90호	- 부분품과 부속품	기본 5%(항공기용) 기본 8%(기타)

소호 제9032.20호의 매노우스타트(manostat)는 압력 조절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소호 제9032.8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흔한 사례는 바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flow), 액면(level)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기다.

즉, 제9032호의 기기, 특히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의 변량에 관여하는 기기로서 압력을 제어하는 것은 제9032.20호에 분류돼 양허 관세 0%가 적용되며,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액압식이나 공기압식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9032.89호에 분류돼 기본 8%(반도체 제조용인 경우 기본 3%)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에서 챔버(Chamber) 전후의 가스 공급 및 배기라인에 설치돼 가스의 흐름에 따른 변량, 특히 압력과 유량을 제어하는 기기는 압력조절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량조절기로 볼 것인가?

● 반도체 제조장비의 진공 챔버 전후의 가스 계통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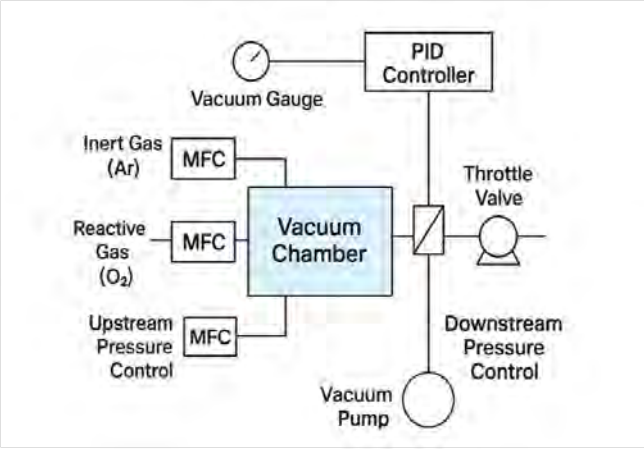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流體)의 흐름에서 유량이나 압력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기의 품목분류는 어떤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유체조절기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유량(flow)과 압력(pressure)은 왜 함께 가는가?

유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량(flow)과 액면(level)은 양(mass)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압력(pressure)은 에너지 또는 밀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액체나 기체의 유량과 에너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체의 상태를 함께 결정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제9026호에 분류되는 벤투리관(Venturi tube)의 사례를 보면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관세율표 제9026호는 '기체나 액체의 유량(flow)·액면(level)·압력(pressure) 측정용 기기'가 분류되며, 앞서 언급한 유체의 '양(유량·액면)'과 '에너지 상태(압력)'를 측정하는 장치들이 모두 이 하나의 호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두 물리량의 유기적 연관성을 방증한다. 특히 이 호 해설서는 압력을 기반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벤투리관을 예시하고 있다.

■ **제9026호 해설서**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유속의 측정용 기기·검사용 기기
(A) 유량계(flowmeter): 이것은 단위시간 당의 용량이나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와 밀폐구[관(piping) 등]를 통해 흐르는 양(量)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積算) 유량계의 원리[터빈형(turbin-type)·피스톤형(piston-type)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differential pressure)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차압(differential pressure) 유량계. 주로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구[예: 피토관(Pitot tube)이나 **벤투리관(Venturi tube)**·간단한 다이어프램·오리피스 플레이트(orifice plate)·특정 형상 노즐(shaped nozzle)]
(ⅱ) 차압력계(differential pressure gauge)[플로트(float)식·다이어프램(diaphragm)식·차압식·원환천칭(圓環天秤: oscillating ring balance)식·플로우 트랜스미터(flow transmitter)식 등]

벤투리관은 유체가 흐르는 관의 일부 구간의 직경이나 단면적을 좁혀놓은 구조다. 이 관 내부로 액체나 기체가 흐를 때, 넓은 통로를 지나던 유체가 갑자기 좁은 목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역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난다. 공간이 좁아지므로 동일한 시간당 흐르는 유체의 질량(Mass Flow)을 유지하기 위해 유체의 흐름 속도(Velocity)는 급격히 빨라진다.

이때 유체의 속도 증가, 즉 운동에너지의 상승은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유체역학의 근간인 '베르누이 정리(Bernoulli's theorem)'에 따라, 유체가 가진 총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돼야 하므로 증가한 운동에너지만큼 유체가 사방의 벽면을 누르는 정압(Static Pressure) 에너지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즉, 속도가 빨라지는(유량이 집중되는) 공간에서 압력은 거꾸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벤투리 효과와 베르누이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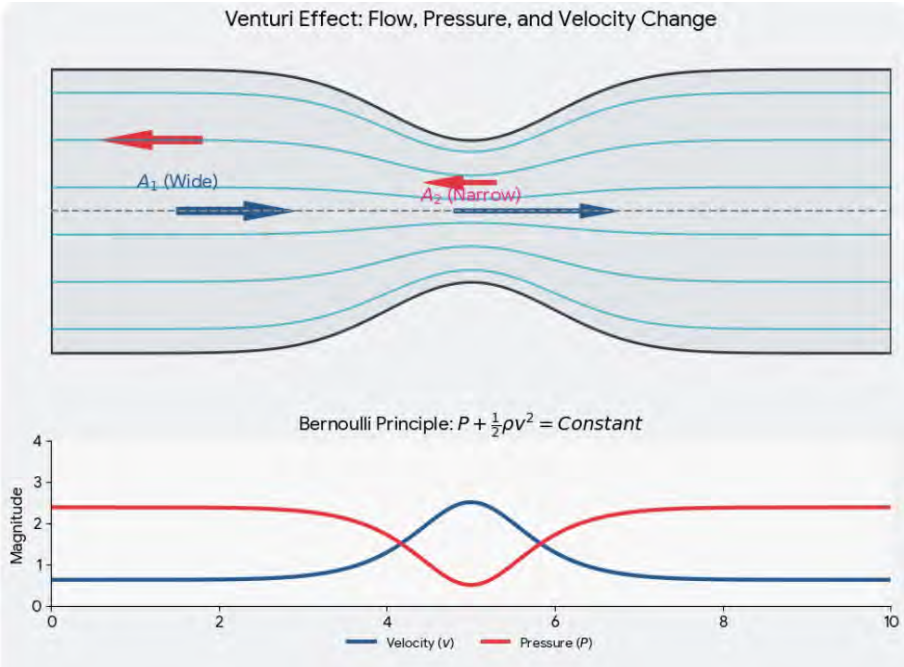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직관적이다. 우리는 벤투리관의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의 '압력 차이(차압, Delta P)'를 측정함으로써, 역으로 이 관을 통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유체의 '유량(Flow Rate)'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완벽하게 계산해 낼 수 있다.

● 벤투리관에서 압력 차이를 이용한 유량의 측정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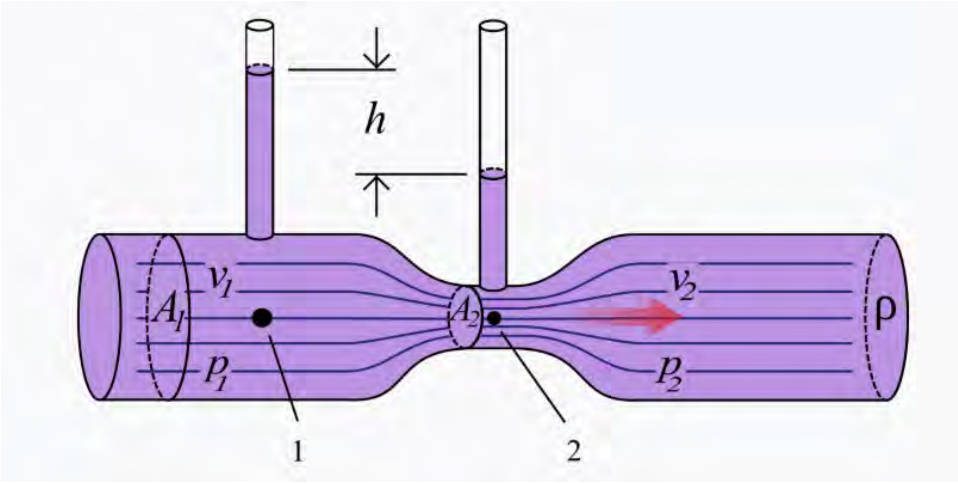

출처: Wikipedia

분명 계기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은 '압력'이라는 에너지의 높고 낮음인데, 손에 쥐게 되는 결과물은 '유량'이라는 물질의 양인 셈이다. 이처럼 유량과 압력은 (적어도 유체의 측면에서는) 별개의 독립된 물리량이 아니라,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하나가 자신의 모습을 바꿔 균형을 맞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3. 반도체 공정에서 유체의 유량과 압력 제어의 문제

반도체 제조공정은 웨이퍼라는 실리콘 원판 위에 원자층 두께의 초미세 회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깎고, 쌓아 올리는 극도의 정밀공학의 집약체다. 이 거대한 공정 장비 내부에서 원하는 형태의 물리적·화학적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변수가 바로 가스(Gas)와 화학 물질이다.

반도체 공정의 8대 공정 중 화학적 반응을 다루는 핵심 단계(식각, 증착, 클리닝 등)와 환경 제어(냉각)에는 수십 가지의 특수 가스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식각공정에서는 강한 플라즈마 상태에서 반응하는 플루오린화 탄소 계열(CF4, CHF3, C4F8, C_5F_8) 가스가 주로 사용되며, 증착공정에서는 실란(SiH4), 클리닝 공정에서는 삼불화질소(NF3), 냉각공정에서는

헬륨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온주입이나 노광공정에서 각기 그 용도에 맞는 특수한 가스가 사용된다.

이러한 공정에서 아주 미미한 양의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가스 공급 속도에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해도, 10나노미터(nm) 미만의 회로선 폭을 다루는 반도체 소자에는 치명적인 단락이나 단선과 같은 수율 저하 불량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 라인은 모든 유체의 흐름을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완벽한 공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유체 통제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 공급 경로에서 유체를 통제하는 장치들을 과연 '압력조절기'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량조절기'로 봐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를 넘어, 장비의 본질을 정의하고 분류해야 하는 품목분류 관점에서도 매우 고차원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질량유량조절기(MFC, Mass Flow Controller)나 상·하류 압력조절기(UPC·DPC, Up·Downstream Pressure Controller)로 불린다. 이들을 모두 묶어서 MFC 계열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기는 보통 압력이나 유량(또는 두 가지 모두)을 측정하는 센서가 장착돼 있고, 원하는 제어값을 설정하고 현재의 측정치와 비교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서가 내장된 컨트롤 보드가 결합돼 있다. 그리고 측정 결과에 따라 변량을 원하는 값으로 환원시키도록 컨트롤 보드에 의해 제어되는 기동장치(보통 밸브)가 포함돼 있다.

이는 제90류 주 제7호에서 말하는 용도와 기능, 그리고 제9032호 해설서에서 말하는 구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기를 제9032호에 분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6단위 소호 레벨에서 이들을 제9032.20호의 압력조절기(manostat)으로 볼지, 제9032.89호의 유량조절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물리적 원리처럼 유량과 압력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서로를 제어하는 수단과 결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스 라인 전단의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는 UPC의 경우, 겉보기에는 압력을 통제하므로 '압력조절기'로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장치가 목표 압력을 맞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취하는 실제 행동은 밸브의 개도량을 조절해 흐르는 가스의 '유량(Flow)'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다. 즉, 압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유량이라는 수단을 지배하는 셈이다.

반대로 MFC는 정밀한 '유량' 제어를 목적으로 하지만, 배관 내의 압력(Pressure) 조건이 완벽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내부 센서가 유량을 정확히 읽어낼 수 없다. 목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가 서로 꼬리를 물고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만 이 장치들을 규정하는 데는

논리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이들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요인은 제품의 '구조적 유사성'에 있다. 놀랍게도 MFC와 압력 제어 기능을 가진 PC(UPC/DPC)는 외관만 봐서는 전문가조차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 구조가 유사하다.** 두 장치 모두 가스가 흘러가는 금속 블록 바디(Body)를 기반으로 하며, 유체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흐름을 막거나 열어주는 미세 제어 밸브, 그리고 이 둘을 제어하는 핵심 두뇌인 제어 회로(보드)가 하나의 모듈로 패키징돼 있다[1]. 가스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하드웨어 구성요소가 거의 100% 일치하는 상황에서 센서가 가스의 질량을 읽느냐 압력을 읽느냐의 아주 미세한 차이, 그리고 내부 제어 보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로직)가 유량을 기준으로 삼느냐 압력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소프트웨어적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H사의 MFC(좌)&UPC(우)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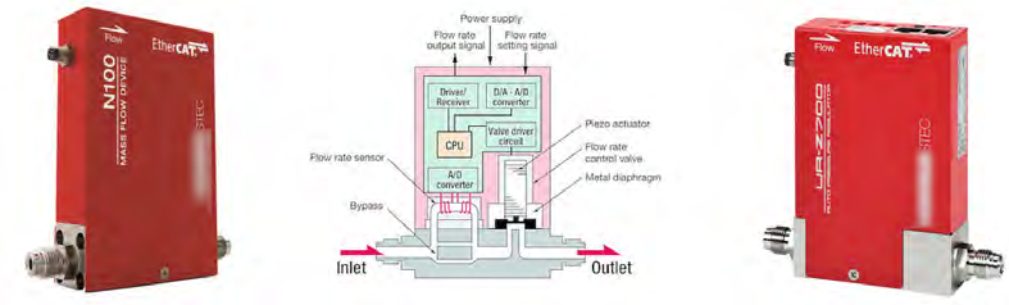

4.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2024년 11월,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이러한 기기들의 품목분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의 공급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그동안 큰 고민 없이 유량조절기(제9032.89호)로 분류해 오던 물품 중 일부를 압력조절기(제9032.20호)로 분류한 것이다.

유량과 압력이라는 두 개의 물리량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하드웨어 구조마저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반도체 유체 제어기기 시장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가스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통제한다는 표면적인 현상을 중시해 이러한 기기를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유량조절기(제9032.89호)'라는 하나의

1)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제9032호 해설서에서 말하는 3가지 구성요소[(A) 측정장치, (B) 제어장치, (C) 기동장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바구니에 담아뒀던 것도 사실이다.

● 2024년 11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55	품목분류3과-6156
결정 세번	제9032.20-0000호	
품명	자동압력조절기, UR-Z724	자동압력조절기, GR-314F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다이어프램 압력 센서, 측정값과 설정값을 비교해 조절된 압력신호를 조작부로 출력하는 자동 제어부, 밸브 구동을 위한 피에조 액추에이터(actuator)와 밸브로 구성된 물품 - 반도체 제조공정(식각·증착)이 이뤄지는 진공챔버로 연결되는 가스 공급라인에 장착해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조절 ※증착·식각가스를 진공챔버로 공급하는 라인에 장착	ㅇ 물품 개요 -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다이어프램 압력 센서, 측정값과 설정값을 비교해 조절된 압력신호를 조작부로 출력하는 자동 제어부, 밸브 구동을 위한 피에조 액추에이터(actuator)와 밸브로 구성된 물품 - 반도체 제조공정(식각·증착)이 이뤄지는 진공챔버로 연결되는 가스 공급라인에 장착해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조절 ※진공챔버 냉각용 가스 공급 라인에 장착
결정사유	<전략> ··· ㅇ 본건 물품은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감응기', 측정값을 설정값과 비교해 설정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조작장치'인 피에조 액추에이터와 유로조절 밸브가 하나의 하우징 내부에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제90류 주 제7호와 제9032호 해설서(소호 제9032.20호 매노우스타트)에서 규정하는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동조절에 있으므로, '압력 자동 조절기'인 본건 물품은 제9032호의 '매노우스타트'로 분류함.	
물품 이미지		

그러나 2024년 11월,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이러한 분류 관행에 명확한 물리적·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 가스 공급 라인 및 진공 챔버 냉각용 라인에 장착되는 자동압력조절기(H사의 UR-Z724, GR-314F 모델)에 대해 HSK 제9032.20-0000호(매노우스타트, 즉 자동압력조절기)로의 분류를 확정했다. 외관과 기계적 메커니즘이 기존 MFC(질량유량제어기)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핵심 사유는 물품

의 궁극적인 기능 또는 목적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엄격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비록 이 장치들이 최종적으로 밸브를 움직여 가스의 유량을 변화시킬지라도, 장치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동조절'에 있다면, 이는 유량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 자동 조절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결론이 시사하는 바는 심오하다. 벤투리관이 압력의 차이를 통해 유량을 계산해 내듯, 유체 제어기기는 태생적으로 압력과 유량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든다. 하지만 법적인 품목분류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성이나 수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장치가 최종적으로 통제하고 고정하고자 하는 물리적 타깃 변수가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 결정이 증명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어변수(controlled/process variable)와 조작변수(manipulated variable)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다. 제어변수란 설정값이 부여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상을 말한다. 이 사례의 물품에서는 압력이 제어변수다. 반면, 조작변수는 제어변수를 맞추기 위해 조작되는 대상이다. 여기서는 밸브의 개폐도 조절을 통한 유량의 변화가 조작변수다.

즉 모든 유체 제어기의 조작변수는 예외 없이 유량이다. 따라서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오직 설정값이 무엇의 단위로 주어지는가(예를 들면, 단위시간당 유체의 양인지, 압력인지)에 달려 있다. 달리 말하자면 설정값이 압력이 아니라 유량이라면 이 물품은 유량조절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진공챔버 전후에 설치되는 대부분 유체조절기가 질량유량제어기(MFC)로 불리며 제9032.89호에 분류 가능하다.

앞서 유량과 압력이라는 두 개의 물리량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구별이 어렵다 표현했지만, 실제로 제90류 주 제7호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 맞추도록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 바로 그 목표치가 제어변수인 것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량이 무엇이든간에 제어변수가 압력이면 압력조절기, 제어변수가 유량이면 유량조절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례가 관세청의 품목분류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의 한 예시로 남기를 바란다.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화물검사 강화하고 민간 협력 확대

항공화물검사센터 구축, AEO 등 신뢰 사업자에는 통관 혜택

[※ 본 컨텐츠는 본지 제2194호(2026.9.7. 발행) '일본 관세리포트'에서 이어집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세관 중장기구상 2030'의 네 가지 변혁 가운데 첫 번째로 '국경관리 전환', 두 번째로 '협력관계 전환'을 제시했다. 두 분야의 핵심은 세관의 검사 기능을 물류 과정에 결합하고,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검사 역량을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데 있다.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는 검사를 집중하되, 국경관리에 협력하는 신뢰 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통관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이다.

일부 선별검사에서 항공 소액화물 전량검사 체계로

국경관리 전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항공 소액화물이다. 현재는 화물정보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해 검사 대상을 고른 뒤 해당 화물을 검사장으로 옮겨 엑스레이(X-ray) 검사나 개장검사를 한다. 그러나 화물량이 급증하면서 세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관세국은 대규모 공항에 통관·검사·보세 기능을 갖춘 '항공화물검사센터'를 설치하고, 항공 소액화물을 집중적으로 심사·검사할 계획이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화물을 이동시키면서 X-ray 검사를 하고, 사전 화물 정보와 수입신고자료, X-ray 검사 영상을 함께 분석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일본은 공항 확장·개편이 추진되는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화물검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오사카 세관과 간사이공항 운영사는 올해 6월 국제화물 기능 강화에 관한 협력확인서를 체결하고, 공항 화물시설 개편과 검사센터 설치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상화물 검사도 검사장 중심에서 물류 동선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는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떨어진 대형 X-ray 검사장까지 별도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화주에게는 운반비와 시간 부담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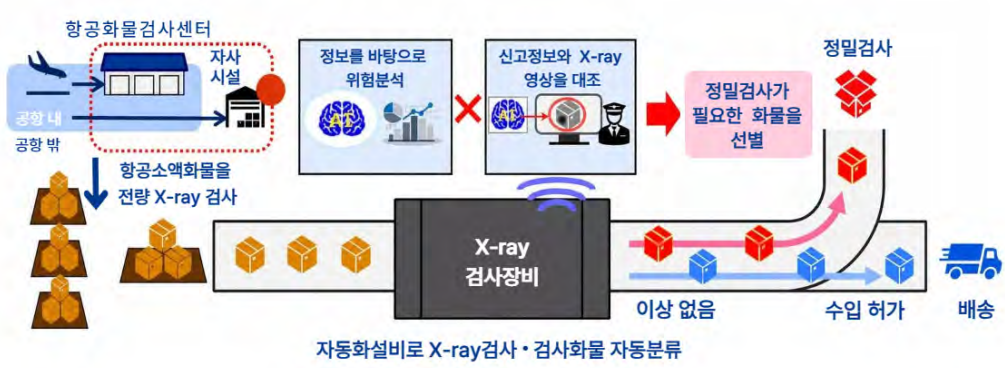

자료: 일본 관세국, 번역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국은 해외 세관의 AI 영상판독 사례 및 최신 검사장비를 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 항만 관리자·지방자치단체·터미널 운영사 등과 항만 재정비계획을 협의해 본래의 이동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형 X-ray 검사장비를 물류 동선 내에 배치할 방침이다.

플랫폼·보세업자 등 민간사업자도 국경관리 참여

두 번째 변혁 **'협력관계 전환'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를 단순한 신고자료 제출자가 아니라 위험관리의 협력 주체로 참여시키는 데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플랫폼, 결제업체, 운송업자, 통관업자가 각각 다른 정보를 보유한다. 관세국은 통관업자가 정식 수입신고 전에 제출하는 화물정보의 항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NACCS)[1]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제우편은 국가와 발송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EAD)[2]의 확보 여부와 품질에 차이가 크고, 우편물에 부착된 종이 세관신고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에 관세국은 일본우편 주식회사와 협력해 EAD의 확보율과 품질을 높이는 한편, 종이 세관신고서를 AI-OCR[3]로 읽어 데이터로 전환하고, 위험분석과 과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세화물 관리에서는 법적 책임과 세관의 감독 수단이 이미 강화됐다. 종전에는 관세법

1)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일본의 세관·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를 연결해 수출입신고와 항만·공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EAD(Electronic Advance Data): 국제우편물 도착 전에 발송국에서 수취국으로 전송하는 발송인·수취인·내용품 등의 전자정보.
3) AI-OCR(Artificial Intelligence-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인공지능을 활용해 종이 문서나 이미지의 문자와 항목을 인식하고 전자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

기본통달에 따라 '사내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업무 절차와 법규준수 체계를 담은 '보세업무규칙'을 정하도록 관세법에 직접 명시했다.

이처럼 법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 데 이어 '세관 중장기구상 2030'에서는 전자상거래 화물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수단도 보강한다. 관세국은 전자상거래 화물을 취급하는 보세창고에 별도의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보세창고에 반출입되는 모든 화물을 NACCS 장부에 기록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세관이 필요할 때 해당 보세업자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협력한 AEO에는 통관 혜택, 부적정 사업자는 통제 강화

관세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4] 보세업자와 AEO 통관업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X-ray 검사, 내용물 확인, 수입신고 전 NACCS를 통한 화물정보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AEO 보세업자·통관업자 등이 취급하는 화물을 공항의 항공화물검사센터에서 검사하는 대신 자체 시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고의 정확성과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 관리는 일부 통관절차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 세관은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받아 미리 심사하고, 화물 도착 후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세관이 발표한 '적하목록 신고·예비심사제도 개편'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고 오류나 단기간의 신고 철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혼입 등이 반복 적발되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제도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21일부터는 예비심사제도를 이용한 적하목록 신고의 경우, 검사 대상 여부를 원칙적으로 예비신고 단계가 아닌 정식 신고로 전환한 이후 통지한다. 일부 사업자가 검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물품의 발송이나 수입을 취소하는 등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통지 시점을 늦춘 것이다. 다만 AEO 수입자와 AEO 통관업자, 세관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업자는 종전처럼 예비신고 단계에서 검사 대상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4대 변혁의 나머지 두 분야인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인재·조직 전환'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AI가 어떻게 세관업무를 바꾸고 한정된 인력을 위험분석과 현장 단속에 집중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강보람 기자 |

4)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화물안전관리와 법규준수 체계를 갖춘 것으로 세관이 공인한 수출입·물류 사업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